

제 1343 호
1987. 2. 11

발행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3
 편집인 김길성
 간곡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3
 전화 785-3887

제	발	행	장	공	보
1343	호	1987. 2. 11	제	1343	호

시 보

차 례

- ◎ 규 칙
 - 제 2156 호 :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개정 3
- ◎ 고 시
 - 제 6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
 - 제 73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4
- ◎ 공 고
 - 제 78 호 : 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 5
 - 제 80 호 : 1987년 상반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사행계획 5

(이런계속)

원									
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공서고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제 8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6
제 85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7
제 87 호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 무선통신) 시행허가에따른공람	7

㉔ 구·사업소공고

강동구제 13 호 : 공공하수도사용계시공고및관제도면공람	8
한강관리사업소제 3 호 : 관인신조	8
한강관리사업소제 4 호 : 관인신조	9

㉕ 사 련

규 칙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2. 11

서울특별시장 영 보 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56 호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원) 제1항중 “정원은
15일이내로 한다”를 “정원은 20
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6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72.1.7)
로 도시계획 사업(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3 호(87.1.1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인가하였
기에 동법 제 26 조 및 동법 시
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마무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련 도시는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력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2. 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신정동 83-24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규모:
도시계획 도로건설

도시계획 도로명	폭	연 장	시 점	종 정
소로3류 15호	5m	118m	신정동 88-24	신정동 35-221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라. 사업기간: 1987.2 ~ 1988.9.30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소유권
이의 권리명세: 단 청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의외권리명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강서구신정동 88-24	담	776	영등포동 94-55	최용진		
강서구신정동 85-221	전	31	국유지			

<p>◎서울특별시고시제 73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57 호('86. 11.28)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31-1의 1필지 도시계획 시설 (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제 26호('87.1.17)의 시행 허가를 위한 공간공고가 공고 기일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 2. 11. 서울특별시 장</p>	<p>사업개요</p> <p>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중구명동 2가 31-1의 1 필지</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도시계획 사업 (시장) 시행허가</p> <p>3. 사업의 시행자: 제일물산공업(주) 대표이사 김인식</p> <p>4. 사업의 규모 및 면적</p> <p>1) 대지면적: 3,014.3 ㎡</p> <p>2) 시장면적: 연면적 27,822.76 ㎡중 8,965.68 ㎡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한함(중층 및 1,2층 은행 3층 일부 제외)</p> <p>지하 2층: 1,140.83 ㎡ 지하 1층: 2,098.61 ㎡ 1층: 1,301.65 ㎡ 2층: 1,352.26 ㎡ 3층: 1,352.26 ㎡ 4층: 1,720.07 ㎡</p>
----------------------------------------------------------------------------------------------------------------------------------------------------------------------------------------------------------------------------------------------------------------------------------------------------------------------------------------------------------------------------------------------------------------------------------------------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의외권리
중구명동 2가 31-1	대	2,808.2 ㎡	제일물산공업	없음
중구명동 2가 31-12	대	206.6 ㎡	(주)김인식	
계		3,014.8 ㎡		

<p>6.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허가일로부터 - 87.12.31</p> <p>7. 토지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해당 없음</p> <p>8. 관계도면: 생략</p>	<p>채 사후관리 지침 연료 1372-764 ('82.5.6)호에 의거 행정처분전기 동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 11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7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7 조 및 전기공사업</p>	<p>1987.2.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연허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152	명보전기 (주)	상대동 429-3	이강문	연허기준 구차탈	영업정지 3개월 87.2.10-87.5.9

<p>◎서울특별시공고제 80 호</p> <p style="text-align: center;">1987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p>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7.2.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명예퇴직대상자</p> <p>2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p> <p>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자</p> <p>나.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재직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초과 10년이하 자진 퇴직하는자</p> <p>2. 명예퇴직신청</p> <p>가. 신청기간: '87.3.16~'87.3.20 (5일간)</p>
--------------------------------------------------------------------------------------------------------------------------------------------------------------------------------------------------------------------------------------------------------------------------	--------------------------------------------------------------------------------------------------------------------------------------------------------------------------------------------------------------------------------------------------------------------

나. 신청 절차: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 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것.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지급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속장은 참초에 산담당관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요구하여 지급한다.

6.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서울특별시공고제 8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시행령 제 27조 2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통지한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란다.

1987.2.11

서울특별시장

- 공 랠 요 지 -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시일지	지적고시일지
쌍문동 475-1 외 5필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쌍문 1동 481 도로개설공사	B=6.7 m L=82	87. 3.1	87. 12.31	서울고시 제 89 호	서울고시 제 89 호
					72.6.30	72.6.30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강
다.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물건)
주소 : 별첨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따.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전기공사법 제 31 조 1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 종전기공사업
면허 취소처분되었기 동법제 42 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7.2.11
서울특별시공

다 음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면허취소 일자	사 유
제 63 호	보령종합 개발(주)	박시준	마포구도화동 538번지	1987. 2.10	○전기공사법 제 7 조 2 항 (면허기준)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87 호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에 따른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 73 호 (74.6.4)
로 결정되고 동고시 제 149 호 (78.
4.11) 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성북 유통업무설비)
고시지역중 월계동 154 번지일대 일
부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
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를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
에게 보인다.

2.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
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의
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 공람기간 : 87.2.12-87.2.26
(14일간)

○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성리과
1987. 2. 11

서울특별시공

-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철계동 154 번지 일대
- 나. 사업의 명칭 :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 출하기지 신축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 가 24-1 쌍용양회공업(주) 대표이사 김채경
- 라. 사업규모
 - 시행면적 6,707 ㎡
 - 건축면적 133 ㎡
 - 연 면적 241 ㎡
 - (사이로 : 5,000 톤 1기)
- 마. 사업기간 (예정) : 87.8.1 - 88.6.30

구 · 사업소공고

◎강동구청공고제 13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발

- 1.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인가번호 85-1 호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된 탄천유수지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장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 2. 관제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7.2.11

강 동 구 청 장

공 랑 개 요

- 1. 사용개시년월일 : 86.11.12
- 2. 배수구역 : 탄천배수구역 도면별칭 (삭제)
- 3. 사용용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강동구 가락동 509 번지
- 4. 사용용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 합류식 (유수지 배수 펌프장)
- 5. 공람기간 : 87.2 - 87.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공고제 3 호





관 인 신 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안양하수처리장의 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조 교부하고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7.2.11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

- 1. 사용개시일 : 1987.2.11
- 2. 직인명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안양하수처리장장인 및 동제인

인 영	 	<p>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7. 2. 11.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p> <p>1. 사용개시일 : 1987. 2. 11 2. 직인명 :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장장인 및 동제인</p>	
공인명	안양하수처리장장인 및 제인		
<p>◎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공고제 4 호</p> <p>관 인 신 조</p> <p>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장의 직인 및 제인용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조교부하고 등</p>		<p>인 영</p>   <p>공인명</p> <p>난지하수처리장장인 및 제인</p>	
<p>사 령</p>			
◎ 1987 년 2 월 7 일 자		병제 2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최 선 길	내무부연수원 교육 과전 ('87.2.10 - '88.2.9)	내 무 국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승 점	" (")	"	"
김 치 운	" (")	"	"
김 동 훈	" (")	"	"
김 동 일	" (")	"	"
손 중 수	" (")	"	지 방 시 기 관

◎ 1987년 2월 1일자 대통령 비서실 서 기 관 지방서기관에 임함. 대우급 근무를 명함		명제 27 호 손 중 수 대 통 령 서울특별시장	
◎ 1987년 2월 10일자		명제 28 호	
성 명	발 명 사 랑	원 부 서	직 급
임상덕	보건위생과방역과장	도봉구보건소방역과장	지방보건기사
장의식	종로구보건소방역과장	서대문구보건소	"
한중석	용산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
정병선	성동구보건소	중로구보건소	"
최인규	동대문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
강영일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
윤효영	갈남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
박영식	마포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
박자디	강서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
이이중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방역과장	"
김덕성	강동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방역과장	"
유성호	서대문구보건소방역과장 직주대리	강 남 구	지방보건기사
◎ 1987년 2월 9일자		명제 29 호	
성 명	발 명 사 랑	원 부 서	직 급
김재형	원예 위하여 그적을 면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직 6급상당
송동주	"	대원산배수처리사무소	지방행정직 7급상당
◎ 1987년 2월 9일자		명제 30 호	
성 명	발 명 사 랑	원 부 서	직 급
유 명 역	비상재력과 파견 근무 ('87.2.10 - '87.3.10)	동대문구	지방행정직기
이 해 용	" (")	도 봉 구	"
주 양 훈	" (")	문 약 구	지방행정직기보
서울특별시장			